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 2. 20 선고 2018가단150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소]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19. 1. 23.

판결 선고2019. 2.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D 임야 16,264m²에 관하여,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8. 1. 12. 접수 제3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는 같은 등기소 2014. 6. 11. 접수 제116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1998. 1. 5. 아들인 피고 B와 강원 평창군 D 임야 16,26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1998. 1. 12. 피고 B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피고 B은 2014. 6. 10. 피고 C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1. 피고 C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고, 피고 C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 ① 이 사건 토지는 조상들의 묘소가 있는 선산으로, 증여 당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4. 6. 11. 피고 C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 ② 피고 B은 부친인 원고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나. 판단

- 1)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민법 제558조), 원고가 1998. 1. 12. 피고 B에게 1998. 1.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 2) 한편, 원고의 주장을 1) 피고 B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 B이 원고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인데(민법 제561조) 피고 B이 그 조건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선행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여 당시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부양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주은영

1)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민법 제558조), 원고가 1998. 1. 12. 피고 B에게 1998. 1.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른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